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84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3항(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로,

나. '21. 12월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필요성

- 국가 자살예방정책 및 서울시 자살예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서울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 사업경험과 인력, 기술, 전문성, 사무처리 능력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다.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2.1.1. ~ '24.12.31.(3년)

○ 위탁사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지원
- 자살예방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 자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 훈련
- 성, 연령, 계층, 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수립,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계
-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

라. 소요예산 : 2,515,929천원 ('21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수탁기관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5층

○ 시설규모 : 423.24㎡(128평)

○ 주요시설 : 1577-0199 상담실, 유족프로그램실, 유족쉼터, 사무실 등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항, 제3항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1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종합성과평가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취지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²⁾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위탁업무

-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지원
- 자살예방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 자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 훈련
- 성, 연령, 계층, 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수립,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계
-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 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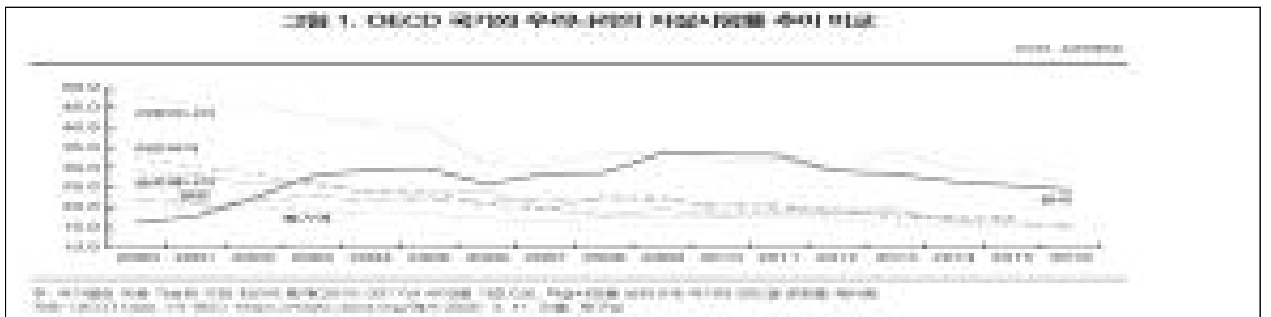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검토

가. 자살예방사업의 추진배경/필요성

- 자살은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동으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의미함³⁾.
-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는 지난 30년간(1990년과 2017년 사이) 자살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자살사망률이 30%가량 감소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황임(그림1 참조)⁴⁾.



- 자살은 혼인관계나 혈연 등 남겨진 가족뿐 아니라 고인의 사회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도 통제하기 어려운 걱정적인 감정과 때론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데⁵⁾
- 이처럼 심각한 자살 문제를 대응하고자 우리나라는 자살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2012년 3월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음⁶⁾.

3) 이슬(2019)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국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자살의 정의 재인용.)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한국사회의 자살 실태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전략_보건복지포럼(2020. 4.)

5) 삼성서울병원(2018) 2018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자살 유족 지원 방안 연구.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배경/경과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⁷⁾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⁸⁾에서도 시장은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2016년 3월부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는

6) 권도현, 박종익, 안용민(20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7.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⑤ <생략>

8)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7.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3.>

③ 시장은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살예방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3.24>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2019년 3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경과 >

<p>□ 사무명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p> <p>□ 현 위탁기관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p> <p>□ 민간위탁 추진현황</p> <p>· 1차: 2016.3.1.~2019.2.28. (3년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p> <p>· 2차: 2019.3.1.~2021.12.31. (2년 10개월 : 명지병원, 공개모집)</p>

다. 민간위탁 사무 추진내용/성과평가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의 현재 위탁사무는 자치구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지원, 자살예방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 훈련,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수립,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 관리,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등으로 구성됨⁹⁾.
- 서울특별시(2021) 자료¹⁰⁾에 의하면, 동 사무에 대한 지난 위탁기간 동안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운영의 종합성과평가는 78.94점으로 나타남.

9) 서울특별시(2019)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위수탁 협약서.

10) 서울특별시·한국산업관계연구원(2021)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종합점수

구분/영역	영역명	영역내용	시험시간	시험점수	비율
공통 사무 평가	1. 사업안건서	1-1. 초지 및 연해 분할			1.00
		1-1-1. 농작구역 및 연해분할 작성법	1.00	2.50	1.85
		1-1-2. 사업안건서 작성법 검토		2.50	1.75
		1-2. 개발구역 및 재건지역 구분법			0.88
		1-2-1. 전경미관, 환경미, 미경관	1.00	3.00	2.50
		1-2-2. 사업예산감축의 효율성		3.00	1.48
		1-3. 사회화 가치 부여			7.28
		1-3-1. 근방지역 및 교통망의 연계	12.00	1.00	1.84
		1-3-2. 사회적 가치 및 공공가치 연계		1.00	1.75
	1-3-3. 지역주민의 요구 충족 노력		1.00	1.80	
	2. 사업설명	2-1. 사업계획 및 예산			7.28
		2-1-1. 사업계획의 작성법	9.00	1.50	1.70
		2-1-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00	0.78
		2-1-3. 사업환경 이해관계자를 및 이해관계자와의 구분		1.00	0.80
		2-1-4. 사업안의 필요성, 타당성		1.50	1.60
		2-1-5. 타당성도 노력		1.00	1.00
		2-2. 사업설명서 작성 노력			0.77
		2-2-1. 사업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서 작성	9.00	1.00	2.20
2-2-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2.00	2.00	
2-2-3. 사업계획 및 예산 노력		1.00	2.00		
개발 사무 평가	3-1. 법제도의 사업계획 활용 추진	3-1-1.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실적			15.00
		3-1-2. 주민참여 계획 실적			2.00
		3-1-3. 주민참여 계획 실적			2.00
		3-1-4. 주민참여 실적, 주민참여계획서	10.00	2.00	1.80
		3-1-5. 주민참여 실적, 주민참여계획서		2.00	1.80
		3-1-6. 주민참여 실적, 주민참여계획서		2.00	1.80
		3-1-7. 주민참여 실적, 주민참여계획서		2.00	1.80
		3-1-8. 주민참여 실적, 주민참여계획서		2.00	1.80
		3-1-9. 주민참여 실적, 주민참여계획서		2.00	1.80
		3-1-10. 주민참여 실적, 주민참여계획서		2.00	1.80
	3-2. 설명서, 사업계획서 작성	3-2-1. 설명서, 사업계획서 작성	9.00	1.00	2.78
		3-2-2.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 참여 계획서 작성		2.00	2.00
		3-2-3. 주민참여 실적, 주민참여계획서		1.00	1.44
		3-2-4.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적 실적		2.00	1.36
	3-3. 사업계획, 실적, 주민참여 실적	3-3-1. 사업계획, 실적, 주민참여 실적	10.00	1.00	2.80
		3-3-2. 주민참여 실적, 실적, 주민참여 실적		2.00	2.80
		3-3-3. 주민참여 실적, 실적, 주민참여 실적		2.00	2.80
		3-3-4. 주민참여 실적, 실적, 주민참여 실적		2.00	1.40
3-3-5. 사업계획, 실적, 주민참여 실적		2.00	1.48		
3-4. 사업계획, 실적, 주민참여 실적	3-4-1. 사업계획, 실적, 주민참여 실적	9.00	1.00	2.40	
	3-4-2. 사업계획, 실적, 주민참여 실적	9.00	1.00	1.80	
	3-4-3. 사업계획, 실적, 주민참여 실적		2.00	2.80	
	3-4-4. 사업계획, 실적, 주민참여 실적		2.00	2.80	
4. 지도작성 비행노력	4-1. 지도작성 비행노력				1.00
	4-2. 지도작성 비행 노력	9.00	1.00	1.80	
사무지 안작성 평가	5. 안작성 제고노력	5. 사업안작성 평가(합계)	14.00	-	1.50

구분/영역	영역명	영역내용	시험시간	시험점수	비율
4. 상하수	1-1. 사업 안작성 고사	1-1-1. 사업 안작성 고사		10.00	0.80
		1-1-2. 사업 안작성 제고 노력		1.00	1.50
	2. 상하수(하수)처리 시설 점검, 보수	2-1. 하수처리 시설 점검, 보수	2.00	2.00	0.80
		2-2. 하수처리 시설 점검, 보수	2.00	2.00	0.80
		2-3. 하수처리 시설 점검, 보수	2.00	2.00	0.80
		2-4. 하수처리 시설 점검, 보수	2.00	2.00	0.80
합계			100.00	11.08	
			150일	환경부	09.84

- 위탁사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살예방 24시간 상담전화 운영은 2.79점(3.00배점)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상담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요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세부 지표명	연도	세부배점(점)	목표	실적	달성률(%)	세부 득점(점)
자살예방 24시간 상담 실적	2019(12년)	1.50	28,308	27,647	89.7%	1.29
	2020(12년)	1.50	27,852	32,982	100.2%	1.50
	합계	3.00	-	-	-	2.79

- 자살예방 전담인력 역량강화 지원은 지역사회 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울 및 자살예방 역량강화 교육, 사업 실행을 위한 자문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2.00점(2.00배점)으로 높게 나타남.

세부 지표명	연도	세부배점(점)	목표	실적	달성률(%)	세부 득점(점)
지역사회 복지 종사자 및 주민 등 역량강화	2019(12년)	1.00	30	30	100.0%	1.00
	2020(12년)	1.00	35	35	100.0%	1.00
	합계	2.00	-	-	-	2.00

-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한 유족 자조모임과 신규유족 발굴은 각각 1.50점(1.50배점)으로 총 3.00(3.00배점)으로 높게 나타남.

세부 지표명	연도	세부배점(점)	목표	실적	달성률(%)	세부 득점(점)
유족 자조모임 참여율	2019(12년)	0.75	35	40	114.2%	0.75
	2020(12년)	0.75	42	34.8	82.7%	0.75
	합계	1.50	-	-	-	1.50

세부 지표명	연도	세부배점(점)	목표	실적	달성률(%)	세부 득점(점)
신규유족 발굴 건수	2019(12년)	0.75	160	160	100.0%	0.75
	2020(12년)	0.75	165	166	100.6%	0.75
	합계	1.50	-	-	-	1.50

- 다만, 유족에 대한 성과지표의 경우, 추진 건수, 만족도 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수행한 생명지킴이 교육 양성은 2.00점(2.00배점), 자살예방 마을 조직화는 2.00점(2.00배점),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도는 1.99점(2.00배점), 자살예방인식개선은 1.00점(1.00배점)으로 높게 평가됨.

세부 지표명	단위	세부정보(%)	목표	실적	달성률(%)	비중/배점(%)
생명지킴이 교육 양성 실적	2021년 1,200명	1,200	1,200명	1,200명	100%	2.00
	2020년 1,200명	1,200	1,200명	1,200명	100%	2.00
	합계	2,400	2,400	2,400	100%	4.00
자살예방 마을 조직화	2021년 1,200명	1,200	1,200명	1,200명	100%	2.00
	2020년 1,200명	1,200	1,200명	1,200명	100%	2.00
	합계	2,400	2,400	2,400	100%	4.00
생명존중 문화 조성 실적, 주민 참여도	2021년 1,200명	1,200	1,200명	1,200명	100%	2.00
	2020년 1,200명	1,200	1,200명	1,200명	100%	2.00
	합계	2,400	2,400	2,400	100%	4.00
자살예방인식 개선	2021년 1,200명	1,200	1,200명	1,200명	100%	1.00
	2020년 1,200명	1,200	1,200명	1,200명	100%	1.00
	합계	2,400	2,400	2,400	100%	2.00

- 다만, 시민의견수렴의 구체적 과정, 추진된 사업별 참여인원 및 실시일 등의 신뢰도 있는 세부정보가 보완 기재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됨.
- 종합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총평은 사업화 활성화 개선 노력으로 SWOT 분석 등을 통해 대응 방안과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창출되는 실제 효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성 중심의 환류 과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계량 실적에 있는 사업 성과 지표들의 목적과 목표 설정 근거가 사업 성과 지표 목표 적절성 항목에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 이에 성과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검토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평가를 위해 실적 지표를 수정 보완 및 고도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3 민간위탁 사무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¹¹⁾(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3항¹²⁾(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수행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¹³⁾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②, ④ ~ ⑤ <생략>

1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 1. 3.>

②, ④ <생략>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위탁기관인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해당 사무를 수행할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갖춘 전문기관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이에,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살펴보면, 동 기관은 2012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 트라우마센터 등의 사업수행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사회복지사 1급,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과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조직으로 평가됨¹⁴⁾.
- 따라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존 사업의 연속성, 서울시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다년간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민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4) 서울특별시·한국산업관계연구원(2021)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4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⁵⁾에 의거,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지적된 개선사항들을 검토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실적 지표를 수정 보완 및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1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 ⑤ <생략>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84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3항(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로,

나. '21. 12월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필요성

- 국가 자살예방정책 및 서울시 자살예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서울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 사업경험과 인력, 기술, 전문성, 사무처리 능력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다.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2.1.1. ~ '24.12.31.(3년)
- 위탁사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자치구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술지원
 - 자살예방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 자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 훈련
 - 성, 연령, 계층, 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수립,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 자살유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계
 -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

라. 소요예산 : 2,515,929천원 ('21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수탁기관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5층
- 시설규모 : 423.24㎡(128평)
- 주요시설 : 1577-0199 상담실, 유족프로그램실, 유족쉼터, 사무실 등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항, 제3항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1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종합성과평가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전영희 (☎ 2133-7547)